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2022년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목 차 】

■ 연수 일시 및 장소

권역	해당 지역	일시	장소 및 예상인원
1권역	진주, 사천, 산청, 함양, 거창, 함천, 하동	2022. 2. 14.(월) 13:30~16:30	진주교육대학교 (270명)
2권역	창원, 함안, 의령	2022. 2. 15.(화) 13:30~16:30	창신대학교 (270명)
3권역	고성, 통영, 거제, 남해	2022. 2. 17.(목) 13:30~16:30	통영시민문화예술회관 (170명)
4권역	김해, 양산, 밀양, 창녕	2022. 2. 18.(금) 13:30~16:30	창신대학교 (260명)

■ 연수 일정 및 내용

시간	시량	프로그램	내용
13:30~13:50	20'	등록	참석자 등록
13:50~14:00	10'	개회식	인사말씀
14:00~14:30	30'	관계회복지원을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 규범교육과 관계회복 지원 -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관계회복 지원 ▶관계회복지원단 안내
14:30~16:00	90'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교폭력 사안처리 법령·지침 이해 -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 - 가해학생 조치 생기부 기재 및 삭제
16:00~16:30	30'	질의 응답 및 폐회	▶질의응답 및 폐회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방안



2022.2.14.(월)~2.18.(금)

경상남도교육청
[민 주 시 민 교 육 과]

목 차

1. 국민의례

2. 과장님 인사말씀

3. 관계회복지원을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4.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5. Q & A

6. 폐회

인사말씀

민주시민교육과 송호찬 과장님

**관계회복지원을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강지명 사무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생활교육이다!

학교폭력 규범위반 V.S. 관계회복

갈등당사자의 해결능력 강화과정 교육

학교폭력 규범위반과 생활교육, 관계회복

● 학교폭력의 본질?

- 금지된 규범의 위반인가?
- 신분에 기인한 금지규범의 설정결과인가?
- 비행행위인가?

=>학폭예방법의 목적: 학생 인권 보호,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

- 수단, 방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법률상 규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갈등을 작은 단계에서부터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나를 인식하고 나와 타인, 타인과 타인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관계회복을 하는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생활교육 그 자체!

-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교육이 중요함
 - 학교폭력은 갈등 당사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 그 자체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해결과정
 - 모든 갈등을 제3의 권위에 호소하여 해결할 수는 없음
 - 다른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인식, 경험도 중요함
 - 절차에 매몰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관점의 제공
- =>생활교육

7

삶 에 서 의 의 미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8

삶에서 회복해야할 관계, 생활교육

- 삶에서 인식하고 돌봐야할 관계 유형
 - 나와 나
 - 나와 타인(공동체)
 - 타인과 타인(공동체)

9

사안처리시 사실관계 + 삶에서의 의미 질문

- 본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질문의 중요성
 -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되어, 대처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 그 자체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해결과정
 - 모든 갈등을 제3의 권위에 호소하여 해결할 수는 없음
 - 다른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인식, 경험도 중요함

10

회복적 질문 ... 삶의 의미를 물어봐 주는 것의 의미

구 분	주요 질문
<상황이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중립적 질문)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줄래?(생각해?) -상황이 생겼을 때를 잠깐 생각해보자. 그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그 상황에서) 네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해줄래? -그때 상대방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영향파악> 이번 일로 누가 어떤 영향(피해)을 받았는가?	-누가 이번 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 일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자발적 책임> 피해(관계)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 스스로(피해자, 가해자, 교사, 친구, 보호자, 학교)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상대방의 부탁을 듣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관계설정>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때 그 상황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어떤 관계로 지냈으면 좋을까?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니? -다른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니?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성장의 기회>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니?

11

초기 조사시 병행되어야할 회복적 질문지

● 사안 확인서

- 학교폭력 사안확인서(피해관련 학생용)
- 학교폭력 사안확인서(피해관련 보호자용)
- 학교폭력 사안확인서(가해관련 학생용)
- 학교폭력 사안확인서(가해관련 보호자용)

12

관련학생 및 보호자 초기대응 대화법 시나리오

▪ 신체폭행 관련학생(가해학생) A와의 대화

교사 :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A학생 : 친구가 저를 먼저 놀리기에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제가 화가 나 때렸어요

교사 : (상황 이해) 친구가 어떻게 놀렸는데 화가 났나요?

A학생 : 친구가 저보고 ~~~라고 했어요

교사 : (생각과 기분 물어보기)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 말해 줄 수 있나요?

A학생 : 너무 화가 났어요. 매번 놀리고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요

교사 : (공감하기) 친구가 만만하게 봐서 화가 났군요.

A학생 : 네

교사 : (사안확인서 작성) 이 일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을 여기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A학생 : 선생님 다 썼어요

13

관련학생 및 보호자 초기대응 대화법 시나리오

▪ 신체폭행 관련학생(피해학생) B와의 대화

교사 :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B학생 : A와 장난을 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때렸어요.

교사 : (상황 이해) 어떻게 화를 내며 때렸나요?

B학생 : A가 저보고 "뭐라고?"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교사 : (피해 상태 물어보기) 그랬군요. 지금은 맞은 곳이 어떤가요?

B학생 : 그때는 많이 아프고 놀랐는데 지금은 조금 얼얼하고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멍이 들었어요.

교사 : (생각과 기분 물어보기) 보건실에 다녀왔으나 방과 후 꼭 병원에 가 보세요. 그럼 지금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14

관련학생 및 보호자 초기대응 대화법 시나리오

▪ 신체폭행 가해학생 A 보호자와의 대화

교사 : 안녕하세요? A학생 담임교사 ○○○입니다. 평소 A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관심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어려운 부분에 대한 관심의 대화로 시작)

그런데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점심시간 교실에서 A와 B가 이야기를 하다가 A가 화가 나서 B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조금 전에 두 학생을 따로 만나보았습니다.

A보호자 : 네 선생님 B가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혹시 우리 A가 왜 친구를 때렸는지 아시나요?

교사 : A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B가 ~~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들었습니다.

A보호자 :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B의 얼굴은 어떤가요?

15

관련학생 및 보호자 초기대응 대화법 시나리오

▪ 신체폭행 피해학생 B 보호자와의 대화

교사 : 안녕하세요? B학생 담임교사 ○○○입니다. 평소 B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관심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어려운 부분에 대한 관심의 대화로 시작) 그런데 유선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점심시간 교실에서 B와 A가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B와 A가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A가 B의 얼굴을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B보호자 : 안그래도 조금 전에 아이와 통화를 하긴 했는데 우리 B가 많이 다쳤나요?

교사 : 먼저 보건실에 다녀와서 상담을 하면서 보니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고 B에게 물어보니 맞을 때는 아팠는데 상담할 당시에는 조금 얼얼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병원진료를 권했습니다.

B보호자 : 그렇군요. 그런데 A가 왜 B를 때린 거죠?.....

16

관계회복지원과 학교장 자체해결제

- 2021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핸드북'
 -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도움자료'
- +2022 '관계회복지원단'
-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연계 등

17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신재봉 장학사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장난에서 범죄로 인식전환

공인들의 활동 중단 요구(스포츠, 방송 등)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학교현장 요구 증가

학폭법 개정 경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가해학생 보호자 동반 교육 이
수, 성폭력 개념 추가

2012년 처분 내용 생활기록부에 기재
(큰 사건 발생 때마다 처벌 수위 강화)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2019년 9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및 2020년 3월 심의위 지원청 이관)

학폭법 개정 주요 내용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신설

- 학교의 자치위원회 폐지 → 지원청 심의위원회 신설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4가지 요건 충족 및 피해자 동의)

- 4가지 요건: 2주 이상 진단서 미제출, 재산 피해 복구, 지속성X, 보복 행위X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유보

- 1호 서면사고,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불복절차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지원 강화(피가해분리, 전문가 의견)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운동부 출전 정지 등

21

학교폭력의 학교급별 특징(초등학교)

장난-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담임 부재시 다수 발생

학생 간의 사안이 부모 사안으로 확대

놀이 중 폭력으로 바뀌는 경우 발생

학교폭력의 학교급별 특징(중학교)

욕설, 신체폭력 다수

집단 폭행, 따돌림 심각

초, 중, 고등학생 중 발생 빈도가 높음

사이버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학교급별 특징(고등학교)

남학생은 겉으로, 여학생은 은근히

음주, 성 관련 사례 많음

남녀 연인 관계 등 어른 흉내 내기

2021.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규정 업무
개인적 판단 < 법률적 기준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연중

- ▶ 사안처리
- ▶ 생활지도
- ▶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실시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 특별교육 이수 신청
-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교과·창체)

2월

-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 졸업생 학생부 처리

3월, 9월

-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 ▶ 친구사랑 주간 운영
-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 학교폭력 실태조사(4, 9월)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학폭법 시행령 17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연간 8시간 이상(아동복지법 시행령 28조)

연간 8시간 이상(교육부 지침-교과, 창체시, 사이버폭력 2~3시간 포함)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폭 인식과 대처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도란도란)

<https://doran.edunet.net/main/mainForm.do>

학교폭력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0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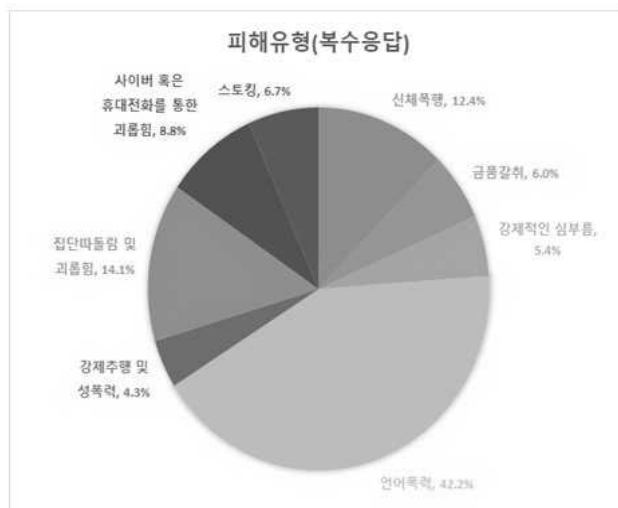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실시

피해	내용
신체적 피해	병원치료 여부를 불문하고 폭력에 의해 신체에 고통을 당한 피해로 멍, 찰과상, 자상, 골절, 타박상, 성폭력 등이 해당
정신적 피해	욕설, 놀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의해 보통사람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재산적 피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의한 치료비나 금품 갈취, 물건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액

학교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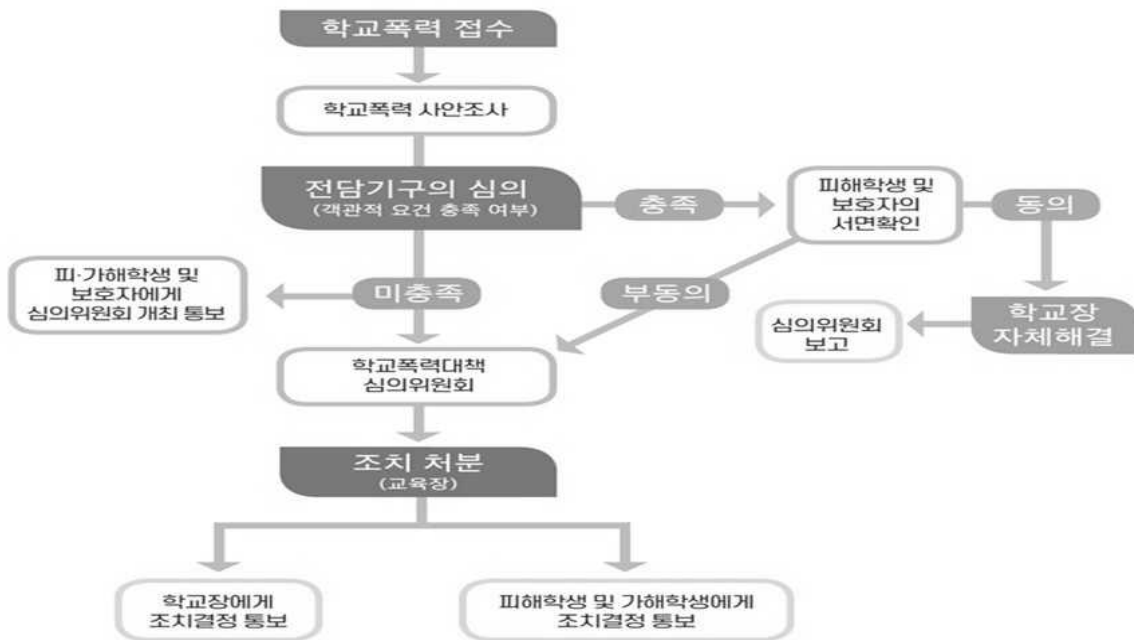


- 피해유형별로는 전체 피해응답자 2,779명 중 언어폭력이 42.2%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4.1%), 신체폭행(12.4%), 사이버폭력(8.8%), 스토킹(6.7%), 금품갈취(6.0%), 강요(5.4%), 성폭력(4.3%)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2021년 경남 학폭실태조사 결과

바른 말 / 스마트폰 사용 교육 필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31

코로나 19 등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p6)

단계	주요내용		
기본 원칙	- 사안처리 절차 진행 시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되, 기본적 진술 기회 및 보호받을 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사안조사 단계	대상	사안조사 방법	증빙자료
	확진학생	- 사안조사 유예, 회복상태 고려하여 실시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조사 실시 (영상, 전자우편, 전화 등) -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조사 실시 (영상, 전자우편, 전화 등)	- 격리통지서
	의심 증상 학생		- 검사결과 자료(검사 실시) - 학부모의견서 등(검사 미실시)
	전교생 등교중지	- 사안조사 유예, 해제 이후에 실시	

32

사안처리 초기 개입(p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사안인지	즉시조치 및 사안 통보	보고 및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2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 신고접수 대청기록 ① ➡ 파·가해자 분리	▶ 학생 안전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③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 통보) ▶ 보호자 통보(유선, 내교요청 등)	▶ 사안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② ▶ 사안진술(학인)서 ④⑤ ▶ 분쟁조정 신청 ⑩	▶ 사안조사보고서 ⑥ ▶ 심의결과보고서 ⑦ ▶ 자체해결동의서 ⑧

■ 즉시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 ※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추인 부결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부과
- ※ 가해학생 긴급조치: 제1호, 2호, 3호, 5호, 6호 조치 가능(5호-6호만 병과 가능, 1호-3호/2호-6호 불가)
- ※ 가해학생 긴급조치 후 학교장 자체해결된 경우: 가해자 조치 학교장 직권취소(내부결재), 출석정지로 미인정 결석이 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 피해학생 조치는 별도의 절차 생략
- ※ 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가능
- ※ 가해자 분리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신고, 발견 등)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의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분리 보호해야 함.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 피해학생 강제분리 의미 아님. 법률 제16조 1항, 21.6.23.부터 시행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 통보) → 해당 학부모에게 신속(명확)하게 통보(유선, 내교요청)

■ 사안조사: 관련학생 면담(조사), 보호자 의견 확보,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사안 보고: 민감사안(집단, 성, 언론보도 등)의 경우 우선 유선보고

최초보고 ②	최종보고 ②		
	조사 결과 오인신고 등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
사안접수 후 48시간 이내 서면보고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내부결재로 종결된 후 교육지원청 보고 ②⑧⑨ 첨부(종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후 보고 ②⑥⑦⑧ (법률 제13조의2)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된 후 보고 ② (법률 제19조)

■ 최초보고(사안발생) 보고처

-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전담기구 종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 보고처

-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전학교) → 심의위원회(관할교육지원청)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 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112로 신고)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

- 근무시간 종료 후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유도
 - 상대방의 신원 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림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림

35

방과 후 학교폭력 신고 후 다음날 조치 요령

-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림
 - 학교소속 및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있는 학교의 전담기구 소속교사와 연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조치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 조사해 줄 것을 요청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 요청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함

36

전담기구의 구성(p11)

•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4,5,6,8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예시) 1년: 매년 구성(권장). 2년: 2년마다 구성. 단, 교원 전근, 학생 졸업 시 구성원 재위촉 공문 필요 - 결원으로 새로 구성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 구성원의 잔여 기간으로 함.] 2월 말 구성하여 3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선출 및 위촉방법

교원	학부모
학교장이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 학교장 위촉

※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이 반드시 운영위원회 개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전담기구 학부모 추천서에 운영위원들이 추천인을 적고 날인을 하는 것도 가능함. 2월 말에 구성을 마쳐 3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부모 위원 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3	4	권장			8
			5	6	7	
학교장이 구성	1	2	2	2	3	3

※ 전체구성원: 교원+학부모 구성원수를 합친 인원수를 의미함

학교장 자체해결제(p13)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전담기구는 사안인지(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필요시 1주 연장 가능)

- 기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사안 기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진단서 회수 불가)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피해가 복구되거나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이 인정)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방법(사례) - 피해학생 중심으로

피해 1명, 가해 3명: 1건으로 처리

피해 2명, 가해 1명: 2건 분리 처리 가능

피해 3명, 가해 3명: 피해 1명과 가해 3명을 1건씩 분리 처리 가능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조치(p20~23)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의료기관, 법률구조 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등을 요청

• 피해학생

2주 이상의 상해

◆ 가해학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면사과

보복 목적의 폭력

과학

※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가해행위나 피해행위, 또는 사이미의행위, 중재조치행위(기타), 학교폭력사건유형으로 구분(바스)

• 긴급을

※ 학교장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조치(p18)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기본 판단 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제1호	서면사과	1~3점						
		제2호	접촉금지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제3호	교내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제4호	사회봉사	7~9점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 내	제6호	출석정지	10~12점					
			제7호	학급교체	13~15점					
		교 외	제8호	전학	16~20점					
			제9호	퇴학처분	16~20점					
부가적 판단요소		- 선도가능성 고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장애학생 여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인정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p24)

■ 제1호(서면사과) 조치완료 기간 명시

■ 제2호(접촉금지) 조치기간 명시(명시하지 않으면 졸업시까지 유지됨)

- 접촉의 범위: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제외

■ 제3호(교내봉사) 조치완료 기간 명시

-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단위 조치(화단·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등)

■ 제4호(사회봉사) 시간단위 조치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봉사(1365 나눔포털, VMS, DOVOL에 등록된 봉사기관 활용), 봉사활동 시수 불인정
 - 사회봉사 조치를 이수하는 기간은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단위 조치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조치
-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미 발생
-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이수하는 기간은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제6호(출석정지) 일 단위 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설정함)

- 회망하는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 가능함(교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자율학습 등 실시)
- 등교하였더라도 미인정결석 처리.
- 출석정지 기간에 특별교육 이수 가능(이 경우는 출석정지 기간이므로 미인정 결석임)

■ 제7호(학급교체) 해당학교 학급수 확인 필수(1학급인 소규모학교의 경우 7호 이행 불가함 - 7호 조치 불가)

■ 제8호(전학)

- 학교장은 교육감(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2021. 경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지침' 참고)
- 전학 조치된 학생은 전적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음. 전출 이전 학교로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 지침 준수
-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각각 다른 학교 배정(교육감 배정학교의 경우)
-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주소지 이전 등으로 자발적 전학', '자퇴' 처리 불가(불가피하게 자퇴를 하려는 경우는 전학 조치 이행 후 전학 간 학교에서 자퇴 처리)

■ 제9호(퇴학)

-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대안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
-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전학 및 자퇴 등 처리 불가

가해 학생 특별교육 부과(p25)

■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조치(제17조제1항제5호 / 제17조제3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심의위원회에서 시간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심의위원회에서 이수시간 부과 기준(권장)에 따라 시간 결정

생활기록부 미기재

- ◆ 가해학생이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 가해학생 심리치료: 보호자 특별교육 미 발생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제17조제9항)

- ◆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조치를 내린 경우(17조제1항제5호 특별교육, 17조제3항 부가된 특별교육) →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부과해야 함

불복 절차(p28)

- ◆ 교육장이 내린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국립, 공립, 사립 모두 가능)

피·가해학생 측

• 교육장이 내린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결정(각하, 기각, 인용)

행정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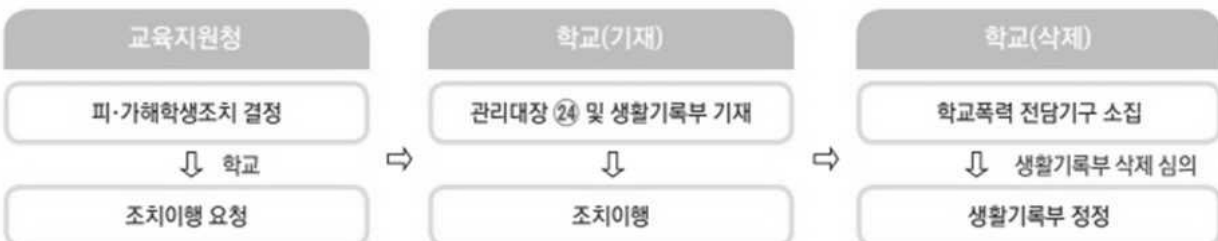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피·가해학생 측은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생생활기록부 기재(p3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유보(p30)

•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대상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 기재 유보 기준

-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는 동일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은 3년 간)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차후 동일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은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이전에 미기재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기재

※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된 제1, 제2, 제3호 조치도 학교폭력 관리대상 ㉔에 기재하고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관리·보유하여야 함

※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된 제1, 제2, 제3호 조치를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미이행하는 경우 미이행한 건에 한해 기재함

전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 미기재 사항 안내(p84)

제목 전학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학생부 미기재 사항(1~3호) 송부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나. 「2021. 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3.00.)

다. 경상남도○○교육지원청-○○(2021.00.00.)호(※ 조치이행 요청 공문)

라. 경남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2021.00.00.)호(※ 전학학교 배정 알림 공문)

2. 전학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한 학교폭력 사안(1~3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행정사항

가. 전출교

1) 모든 전학생 반드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및 미기재 사항 확인 필수(조치대장)

2) 있을 시: 타학생 조치사항 삭제 후 복사(원본대조필) 첨부하여 공문 발송

3) 없을 시: 나이스/학적/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 접수 및 송부/조회/해당학생조회 후
- 맨 아래 (유의사항)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및 1~3호 미기재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전출자료 발송

나. 전입교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나 미기재 사항 송달 시 즉시 학교폭력 조치대장에 기재

2) 미기재 사항의 경우 차후 학폭 재발 시 미기재 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3) 가해학생 조치사항 공문 미발송이고, 전출자료보내기에 '학폭 조치 및 미기재사항 없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전출교에 기재 요청해야 함

붙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김00) 1부. 끝.[서식 ㉔-4]

※ 학교 학적(전학)담당은 모든 학생 전학 전에 반드시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미기재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필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대장 확인 요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8호 전학뿐 아니라 일반 전학의 경우도 해당됨. 해당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이스/학적/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 접수 및 송부/조회/해당학생조회 후 - 맨 아래 (유의사항)란에 '학교폭력 조치 및 1~3호 미기재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전출자료 발송하여야 함(확인 미흡이나 미발송, 송달된 것 미기재로 인해 문제 발생 시 법령이나 지침 위반으로 양교 분쟁 소지가 큼)

학생생활기록부 삭제(p32)

가해학생 조치사항	영역	삭제시기
제1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에 삭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 ※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
제2호		
제3호		
제7호		
제4호	출결사항 특기사항	• 원칙: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졸업 직전 전담기구에서 심의 가능 - 동일학교 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2건 이상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았고 - 2건 이상을 일으킨 학생은 심의 대상 아님), - 졸업학년도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 경우(9.1. 전 조치된 건)에만 심의대상으로 올릴 수 있음(졸업학년도 9월 1일 이후 조치를 받은 경우 심의 대상 아님) ※ 참고 제출자료: 조치이수 확인서류, 본인 자필 의견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
제5호		
제6호		
제8호	학적사항	• 삭제대상 아님
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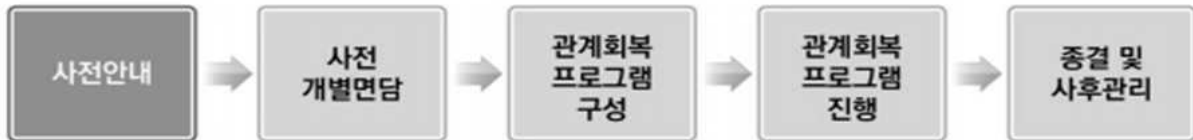
※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해학생 조치대장을 학년도 별로 작성하여 관리

※ 전담기구는 졸업 후 2년이 경과된 가해학생 조치(제4,5,6,8호) 사항 삭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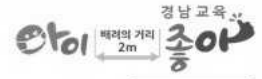
학교폭력 민원 응대

- ✓ 공감, 지원, 협조
- ✓ 지나친 감정 대립, 학교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안 됨
- ✓ 수용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 ✓ 수용이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다는 명확한 표현
- ✓ 수용이 불가능 한 이유는 법 등의 근거 제시
- ✓ 공감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해결

학교폭력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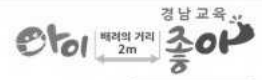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과 강형천 장학관

Q.1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등 문의를 위한 연락처를 안내해 주세요.

A.1



학교폭력 사안처리(학생간 성폭력 포함)

- 초등학교: 210-5272
- 중학교: 210-5273
- 고등학교: 210-5274

학생간 이외의 성폭력, 성인에 의한 아동 성학대

- 성인식개선담당: 210-5295

아동학대

- 교육인권경영센터: 210-5176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학교폭력담당: 210-5273

경남아이종아희망드림센터

- 학교폭력담당: 210-5274

Q.2

학교폭력의 대상 및 범위가 애매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만 해당함.
- 피해자가 성인이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교폭력이 아니고, 선도위원회 사안임.
- 학교폭력법의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임.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해학생 조치'는 할 수 없지만[형사처벌은 별개], '피해학생 보호' 가능

Q.3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신고를 각각 달리 해야하는데... 각각 법률도 따로 있고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네요. 학교에서는 하나로 통합해서 업무를 처리 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

A.3

[아동학대]

- 가해자가 보호자(교사 포함) 지위에 있는 성인인 경우 - 아동학대로 처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수사기관 신고의무 0
- 가해자가 보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성인의 경우 - 아동학대로 처리
- 수사기관 신고의무 ×

※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양식’ 이 아닌 ‘아동학대 양식’ 으로 보고

[성 사안]

- 학생 : 학생 성사안 - 학교폭력으로 처리 - 수사기관 신고의무 0

[가해자: 학교밖 청소년 포함]

-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 아동학대로 처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수사기관 신고의무 0

※ 아동학대로 보고하는 경우 학교는 신고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만 하면 절차가 끝남. 피해학생 조사, 가해자 조사는 경찰과 시군청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조사 후 조치함.

Q.4

가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안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은 있고 피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알려주세요.

A.4

가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해학생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3주 내에 가해학생의 특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만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차후 가해학생이 특정되는 경우 가해학생 처분을 위한 심의위 개최

피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함. 따라서 피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없음.
- 이 경우 가해학생을 선도위원회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선도위원회 처리 후 피해학생이 나타날 경우 또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중처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Q.5

경찰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경찰에선 조사 과정이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업무처리 요령을 알려주세요.

A.5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31항

-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들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있음. 경찰도 교육청이나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Q.6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어찌죠?

A.6

학교장 자체해결 등이 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각자에게 구체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 등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받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심의위원회는 누구의 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는지 등으로 판단.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심의위원회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조치유보'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음]
- 학교에서 무리하게 피·가해를 나누려 하지 말고 피해관련, 가해 관련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임.

Q.7

**보호자가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사 내용을 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A.7

CCTV에는 녹화영상에는 관련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얼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 모자이크 처리 후 부분 공개 역시 '정보주체 이외의 대상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후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두25729판결)

Q.8

전담기구 성원을 위한 정족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전담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A.8

전담기구의 성원을 위한 정족수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남가이드북11p]

전담기구의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4,5,6,8,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Q.9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담 기구에서 선도위원회처럼 교내 봉사 정도의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9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처벌보다는 상담 등의 교육적 조치, 피가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 등을 통해 학생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의 제도임
- 처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
- 학생 처벌을 통해 선도가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4가지 요건 미충족 처리 - 단, 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함: 피해자 측에서 자체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설득의 명분이 필요함)

Q.10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사이버폭력일까요? 성폭력일까요?

A.10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사이버 폭력

-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발생보고서에는 두 곳 모두에 체크를 해도 됨.
- 단 성사안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버성사안의 경우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교사 보호를 위해 필요]

Q.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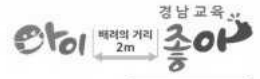
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 경우 처리 요령이 있나요?

A.11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일시, 장소, 피해상황)을 진술하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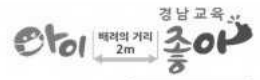
- 오인신고라 할지라도 피해관련 학생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
- 가해로 지목된 쪽에서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학교가 자의적으로 '학교폭력이다/학교폭력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마무리할 권한이 없음.[심의위 권한]
-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폭력' 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양측에 설명.
- 법률상의 미비로 인해 학교폭력법에는 무고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사회법으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다룰 여지가 있음

Q.12



사귀던 남(A)녀(B) 학생이 있었고, 다른 남학생(C)이 여학생(B)에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A는 C를 위협을 합니다. 이에 C는 위협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성사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12



여학생(B)와 남학생(C) 사이에는 성사안으로 신고

- 두 사안을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남학생(C)가 여학생(B)에게 한 행위는 성사안이고,
- 남학생(A)가 남학생(C)에게 한 행위는 위협(협박) 사안이 되겠음.
- 학교는 위 남학생(C)의 성사안을 인지한 이상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성사안 신고의무]
- 성사안 외 학교폭력은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는 없음.

Q.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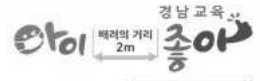
이미 4호를 받은 상황이고, 또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가중처벌은 어느 정도 인가요? 무조건 4호보다 높은 조치를 받는지, 피해자가 지난 사안과 같은 경우와 다를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학급 교체는 가 / 피해 학생이 같은 반에 있을 경우에만 조치 가능?

A.13

가중처벌은 심의위원회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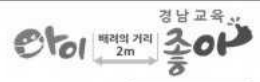
- 앞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뒤 사안은 그것만으로 처분 따라서 1~3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음. [단, 법률 개정으로 1차 점수 산정 후 경감이나 가중의 요소로 학폭 재발 여부가 작용함.]
- 학급 교체는 피/가해 학생의 분리의 개념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처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같은 반이 아니더라도, 타학교 학생이라도 점수 산정에 의해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단 불복절차가 진행될 경우 판사의 성향에 따라 '분리가 불필요하므로 조치가 부적절하다' 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 불가]

Q.14



**보호자 상담 중 보호자 스스로가
'내가 아이를 때렸다' 라고 말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
지?**

A.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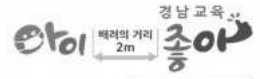


아동학대는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인권경영센터(210-5176)으로 문의.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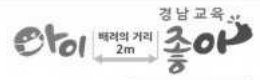
- 법적인 해석 결과만 안내하자면
- 위와 같은 상담내용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법령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아동학대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Q.15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5



피해자 측에 법률 등을 충분히 안내[미처리 시 법률 위반, 피해학생 보호, 비밀유지-비실명 진행 등]하고 학교폭력으로 처리함. 피해자 측에서 원할 시 ‘오인신고/학교장 자체해결’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제4항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Q.16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사안에 연루되어 있을 때 피해학교에서만 발생 보고를 하면 되나요?

A.16

관련된 모든 학교가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된 모든 학교가 사안 발생 보고 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학교나 먼저 인지한 학교에서 사안의 내용을 관련 학교와 공유하여 모든 학교가 발생 보고 및 사안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여러 학교가 연루된 경우, 먼저 피해학교에서 전담기구 심의[학교장 자체 해결 4가지 요건 심의] 및 피해자 측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 여부 확인 → 1. 가해학교는 피해학교의 결정에 따라 동일하게 전담기구 심의 결정[충족/미충족-유선 안내 가능], 피해자 측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피해학생 소속학교가 가해학생 소속학교로 동의서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 [경남 가이드북 12P]. - 전학교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후 보고.[첨부서식 6,7,8]
- 2. 피해자 측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미작성하고 개최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소속학교에서 가해학생 소속학교로 유선 안내. - 전학교 개최 요청

Q.17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중 지속성의
기준이 따로 세워진 것이 있을까요?**

A.17

따로 마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전담기구 위원님들의 판단

- ‘지속성’ 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판단.
- 애매한 경우는 ‘가능’ 으로 결정해 놓는 것이 차후 심의위개최와 학교장자체해결 두 길을 열어두는 것임[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피해자측에서 개최를 요청하면 개최하여야 함]
- 차후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에서 화해가 되어 자체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학교전담기구에서 미충족[지속적이다]으로 판단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하다고 했을 때,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법적 문제는 없지만 민원 문제 있음]

Q.18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차후 가해자 측과 화해[합의]되었다고 학교장 자체해결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합니다?[또는 진단서 회수를 요구합니다]

A.18

진단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체해결 불가합니다.[낙장불입/일수불퇴]

- 학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제출 전에 분명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였다면 그 책임은 제출한 측에 있습니다.
- “진단서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도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개최가 된다. 제출하면 차후 화해가 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된다. 피해자 측에서 두 가지 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진단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제출도 가능하다.” 등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 이런 안내 없이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는 피해자 측에서 설명 부족으로 문제 발생하였다고 민원 제기 - 답변 어려움

Q.19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지 않겠다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A.19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설득이 필요. 그래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보고. 다음 절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 [다시 이행 안내(미이행 시 추가 조치 알림)-미이행 시 심의위 개최 추가 조치(전학/퇴학 등 상위 강제 조치 가능). 보호자의 경우 과태료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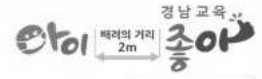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1항

- ⑪ 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제23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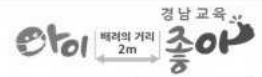
- ① 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20



사안 발생과 동시에 피해학생과 가해자 간 분리조치를 해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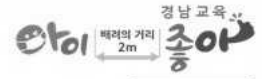
A.20



2021. 6. 25. 발송한 공문을 꼼꼼하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0. 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명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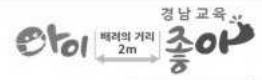
- 분리 기간은 최대 3일(월화수, 목금토, 금토일 등등)
-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아님
- 가해학생을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 하도록 조치함
- 반이 달라 분리가 되었다 판단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원하면 분리가 필요
- 분리의 예외 항목도 반드시 확인
- 피해학생이 분리 의사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아도 됨
- 학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

Q.21



기재 유보 학생의 전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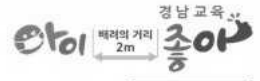
A.21



전출교에서 기재 유보 대장 사본을 전입교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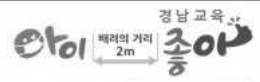
- 전학학생의 가해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출교에서 가해학생 조치대장(유보대장) 사본을 공문에 첨부하여 전입교로 송부.
- 가해사실이 없는 경우는 나이스/학적/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 접수 및 송부/조회/유의사항란에 '조치사항 및 미기재사항 없음' 기재 후 자료 발송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공문 생략]
- 전입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출교에서 의무적으로 발송
- 이 과정이 생략되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

Q.22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삭제 시기 및 절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A.22



졸업 ~ 2월말 학생부 마감 전

[졸업 예정 학생]

[1] 1,2,3,7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전담기구에서 명단 작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출

[2] 4,5,6,8호 - 졸업 2년 후 삭제 원칙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전담기구 심의 - 삭제 명단 작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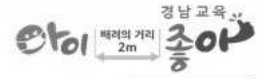
[졸업생]

[1] 1,2,3,7호 - 졸업 후 2년 경과 시점에 삭제

전담기구에서 명단 작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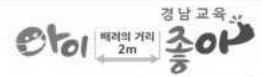
※ 9호 : 삭제 대상 아님, 미삭제된 졸업생 1,2,3,7호 발견 즉시 삭제

Q.23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학생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23



매년 졸업~학생부 마감 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대장’ 을 꼼꼼하게 확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대장’ 인수 인계 철저. 연도별 삭제 대상자 꼼꼼하게 체크
- 발견 즉시 전담기구 삭제명단 작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출 - 삭제 승인 - 삭제

※ 민원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 • •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 • •
학교폭력 담당
055)210-5272~4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감 / 사 / 합 / 니 / 다

경남교육
아이중아